

■ 판례 동향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관세법」상 판매자를
확정한 판례 해설

■ 품목분류 동향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 불편하면
짐 싸들고 와 ‘집세’ 내라?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김재현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11월 11일(통권 제2106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관세' 불편하면 짐 싸들고 와 '집세' 내라?

06 Weekly News**관세행정실무해설**

- 16 관세행정안내
세관장이 행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6 질의응답사례
한·영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판례동향

- 39 관세판례해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관세법」상 판매자를
확정한 판례 해설

품목분류동향

- 47 품목분류해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의 품목분류
- 65 세번 바로잡기
밀크
- 67 상식 밖의 상품학
명품 귀걸이를 헐값에

최신개정법령

- 70 공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및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 72 입법예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 불편하면 짐 싸들고 와 ‘집세’ 내라?

2024 美 대선서 트럼프 당선, 무차별 통상정책에 철저한 대비 필요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며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돼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미국 내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가며 국제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11월 7일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구호를 바탕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줄기차게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관세국가가 될 것이고 그 비용은 다른 나라들의 비용이 될 것”이라며, “내 메시지는 간단하다. 對美 수출을 하고 싶으면 제품을 오직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월 7일 ‘2024년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을 통해 “트럼프는 무역적자 축소 및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동맹국을 불문하고 보편관세, 상호관세 등 관세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관세정책을 펼칠 경우 한국은 그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부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문제 삼았으며, 올해 유세과정에서 對EU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동맹국일지라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 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사 빈도와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연평균 77건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연평균 53건에 비해 약 1.5배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2017 ~ 2020년까지 무역특혜연장법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및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적극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PMS 긍정판단 총 25건 중 17건이 한국 기업 대상이었다.

2023년 미국의 무역적자국 1위인 중국(△2,794억 달러)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향후 중국의 외교정책 및 양국 관계에 대해 중국의 對美정책은 일관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가 가장 걸끄러운 국가는 중국이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박탈, 60% 관세 부과 등 전면적인 디커플링 추진과 중국의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한 관세 우회 차단을 위해 고율 관세 부과 및 기존 무역협정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보복관세 부과,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여전히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생산설비의 15 ~ 20%가 중국에 소재한 한국은 對中 관세 인상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더불어 중국의 멕시코 등 제3국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對中 관세 추가, 상대국의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인상 등의 관세조치 실현은 WTO, FTA 등 미국이 체결한 국제통상 조약상의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중국은 트럼프 2기의 對中 관세조치에 유사 관세조치나 수출입통제 등을 통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 중국産 제품의 우회수입이 늘어나게 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3국의 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글로벌 보호주의 조치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WTO, FTA상의 관세양허(시장개방)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적자, 환율 등 국가비상사태나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을 목적으로 국내법에 근거해 시기와 대상이 제한된 비포괄적 수준의 관세조치를 도입할 경우 무역질서의 불안정적 유지 속 긴장관계가 팽배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 설득해 실사구시적 국익 실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모든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보편관세 조치가 수입품 간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미국産 제품과의 경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화된 미국 제조업과 여전히 높은 수입의존도를 고려한다면 부정적 영향은 업종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대응 및 제3국의 유사 조치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별도로 고려할 경우 중국 및 불공정무역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관세조치는 공정하게 제조돼 수출된 우리 상품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관세 및 비관세적 수단을 통한 미국 중심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자본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미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고용 창출, 세수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다양한 경로로 전달함으로써 입법·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취미·수집용 '총포·도검'도 직구 전 허가 먼저

관세청, 올바른 직구 방법 제안 및 해외 직구 특별 통관 대책 시행

올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 이용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직구가 보편화됐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부정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11월 7일 마약, 총포, 도검류 등을 허가나 승인 없이 반입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올바른 해외 직구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미사용 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주기적으로(6개월에서 1년) 재발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연락처와 해외 직구 시 연락처가 다르면 통관이 제한되므로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연락처도 변경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민비서 가입 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위조상품은 수량, 금액에 관계 없이 전량 폐기되며, 대마젤리나 CBD 오일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포·도검류는 수입 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모의총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므로 에어소프트건(AirSoftGun)을 비롯해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도 모의총포로 확인된 경우 통관 불가이며, 모의총포 완제품을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하다. 다만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물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제된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인해 올해 연말 해외 직구로 최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11일부터 연말까지 '해외 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송업체·창고관리업체 등 해외 직구 민간 유관업체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 통관 TF팀'을 세관별로 운영해 통관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 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우려가 높은 주요 우범국 특송화물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단속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의류, 잡화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 김성은 기자 |

ESG와 함께 필수 보고기준 '자연자본 공시' 부상

기업 정보 공개 범위 '기후변화' → '자연'으로 확대되고 의무화 변화 조짐

국제사회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정보 공개의 범위가 '기후변화'에서 식물, 동물, 물, 토양, 광물 등 '자연'으로 확대 강화되면서 자연자본 공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향후 국제 표준이나 법제화 등을 통해 점차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월 7일 발표한 '자연자본 공시 확대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인 '자연자본 공시'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가 주도하고 있는 자연자본 공시는 2022년 12월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의 자율적 이행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자연자본 공시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어서 2023년 9월에는 유엔(UN) 산하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가 기업의 자연 관련 리스크 평가, 관리 및 공시를 위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며 자연자본 관련 공시의 기본 토대를 확립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어도 자연자본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전 세계 416개 기업과 기관이 TNFD에 참여해 자발적으로 자연자본 공시를 선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17개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5개에 불과했다.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연자본 공시는 기후공시처럼 국제 표준이나 법제화를 통해 점차 의무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U는 2023년 1월 자연자본 공시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을 발효하고, 올해부터 일부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도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를 포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세부이행 지표를 수립하고 기업의 생물다양성 정보공시를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까지 TNFD 권고안을 기반으로 한 국내 자연자본 공시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를 통해 자연자본 정보공시기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자연자본 관리 대처가 미흡해 경제적 피해를 겪는 기업들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자본 관리 소홀로 주가 하락, 소송 피해, 벌금 부담 등 다양한 재무적 피해를 겪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자본을 직접 활용해 제품화하는 수산업, 임업이나 식품 업종은 물론 금융이나 운송 등 서비스 업종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자연자본 관리 소홀에 따른 재무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무역협회 장현숙 그린전환팀장은 “재무공시, ESG 공시와 함께 자연자본 공시가 기업 보고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패러다임 변화를 주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구현 기자 |

“1900만 명 동시 투약 가능”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마약밀수 양

관세청, 총 623건, 574kg 적발로 일평균 2건·2.1kg 차단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밀수 규모가 19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약 19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일평균 2건, 2.1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셈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증가했다. 여행자 및 국제우편 등을 통한 자가목적 소비와 마약조직의 대량밀수 등이 늘며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 및 적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3분기까지의 마약 적발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의 단발성 대량 밀수 1건(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하려다 적발된 필로폰 402kg)을 특이치로 제외할 경우 적발 중량은 ▲2020년 9월 134kg, ▲2021년 9월 292kg(694kg 중 402kg 제외), ▲2022년 9월 383kg, ▲2023년 9월 496kg, ▲2024년 9월 574kg로 증가하는 추세다.

● 마약 단속 현황 ●

(단위 : 건, kg)

구분	2023년 1~9월		2024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괄	501	496	623	574	24	16

출처 : 관세청

적발 건수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대마제품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나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량 마약 반입 건수와 함께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함께 증가하며, 적발 중량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10kg 이상 대량 밀수는 15건, 272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00%, 중량은 330% 증가했다.

● 10kg 이하 소량 마약밀수(좌) 10kg 이상 대량 마약밀수(우) 현황 ●



출처 : 관세청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 국제우편(319건, 51%)이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156건, 25%), ▲여행자(141건, 23%), ▲기타 경로(7건, 1%) 순이었다.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272kg, 47%), ▲국제우편(145kg, 25%), ▲여행자(95kg, 17%), ▲기타 경로(62kg, 11%) 순이었다.

● 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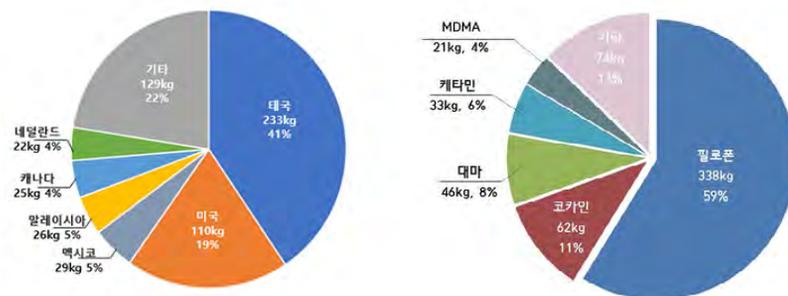
구 분	2023년 1~9월		2024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국제우편	227	243	319	145	41	△40
특송화물	142	139	156	272	9	96
여행자	129	102	141	95	9	△7
기타*	3	12	7	62	133	402
합계	501	496	623	574	24	16

* 선원, 수출입 화물, 선체 외부, 반입경로 불상 등(출처 : 관세청)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중량 기준으로 ▲태국(110건, 233kg), ▲미국(137건, 110kg)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주요 필로폰 생산지역과 인접해 있는데다 대마 합법화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122건, 338kg), ▲코카인(6건, 62kg), ▲대마 (172건, 46kg), ▲케타민(51건, 33kg) 등의 순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필로폰은 38%, 코카인은 919%, 케타민은 5% 증가했고 대마는 62% 감소했다. 필로폰은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으로 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마는 적발 건수가 14% 증가했으나 1kg 이상 대량 밀수가 감소하며 적발 중량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코카인은 국내 반입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2건(61.6kg) 적발의 영향 때문으로 파악됐다.

● 마약 출발국별 단속 비중(좌)과 마약 종류별 단속 비중(우) ●



출처 : 관세청

관세청 한민 조사국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우범화물 선별시스템’, ‘물품 정보와 X-ray 영상정보의 동시구현 판독시스템’을 구축해 우범국경 화물 검사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판례평석 공모전 영예의 대상 발표

올해 총 64편 연구논문·판례평석 가운데 수상작 45편 선정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 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및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결과를 11월 6일 발표했다.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 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공모전 심사 결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 이시영 씨가 2024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대상에 선정됐다.

품목분류 연구논문에는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대문관세법인 이민범 씨가,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대)·이소정(고려대) 팀이 대상에 각각 선정됐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대학(원)생 리서치 부문에서는 ‘C-커머스의 성장에 따른 관세법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언’을 주제로 리서치 보고서를 제출한 김원지·이다원·임사랑(숙명여대) 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대학(원)생 리서치 부문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에 대한 이론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이외에 각 부문별로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 ~ 4팀, 장려상 4 ~ 6팀 등 총 45개 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ustoms.go.kr/cvnci/main.do)와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앞으로도 연구저변을 확대하고자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11월 14일과 28일에 각각 개최되는 ‘품목분류 포럼’, ‘관세평가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할 예정으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제조소 한 곳만 표시 가능

앞으로 의료기기 제품 용기나 외장에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제조소 한 곳 주소를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주소 표시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제품 용기나 외장에 허가받은 제조소의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된 제조소 한 곳의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소상공인 규제개선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업체 부담이 완화되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관련해 세부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043-719-3810, syyun84@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EU도 C-커머스에 골머리 ··· 테무 조사 착수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를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1월 5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테무가 플랫폼 내 불법 제품 단속에 소홀, 소비자들의 중독성 유발 및 구매 조작 시스템 제공 등을 근거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해당 결정은 올해 9월 테무가 제출한 위험 평가 보고서와 6월 및 10월에 EU 집행위가 요청한 정보에 대한 답변 및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유럽에서 테무 사용자는 월 기준 약 9,200만 명으로 테무는 올해 5월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VLOP, Very Large Online Platform)'로 지정돼 디지털서비스법 하에서 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위의 직접적 감시를 받도록 요구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EU 집행위는 규정 미준수 제품의 판매 제한 시스템 여부 및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거래자들의 판매 금지 조치 실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게임 형태의 보상 프로그램 등 소비자들에게 중독성을 유도하는 요소가 개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콘텐츠 및 제품 추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 맞춤형 분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최소 하나의 추천 옵션을 제공하는지, 테무의 공개 데이터에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해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브뤼셀지부는 쉬인(Shein),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 타 중국 플랫폼들도 덤핑, 강제 노동, 환경오염 문제로 EU 규제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기표원·소비자원 해외 직구 시즌 앞두고 안전한 해외 직구 캠페인 실시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안전한 해외 직구 이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실시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1월 11일 광군제와 29일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구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월 7일 밝혔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동안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리콜 제품의 주요 위해사례를 제품군별로 소개하고,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기표원과 소비자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한 해외 리콜 정보 확인 방법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지하철 역사와 SNS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구매 시 해외 리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등 안전한 해외 직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무역위, 베트남에 한국産 철강 반덤핑을 신중 조사 요청

무역위원회는 11월 6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 혹은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다.

양국 무역구제기관은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발효 및 2018년 3월 한·베트남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MOU체결을 통해,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구성한 이래 매년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상호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무역구제 조사 시 현장실사 기법,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무역구제의 관행과 주요 쟁점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무역위는 베트남이 올해 6월 조사 개시한 한국産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 관련, 해당 제품의 베트남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조사 진행과 최소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양측이 협력관계를 지속하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 소통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양측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각각 3건이 조치 중이며, 1건은 조사 중이다. 베트남 측이 한국産에 대해 부과 및 조사 중인 건은 컬러도금강판, 철강와이어, 아연도금강판 등 모두 철강제품이다.

| 하구현 기자 |

기표원·경자청, 중소기업 TBT 대응 위해 맞손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이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뜻을 모았다.

기표원과 경자청은 11월 5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MOU를 체결하고 기관 간 TBT·해외인증 관련 최신정보 공유, 애로조사 및 자문,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TBT 대응 지원 업무는 기표원과 경자청 간 업무협력을 통해 TBT 대응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지원해 수출역량 제고 및 신산업 선점 기반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경자청 입주기업 대상으로 수출애로를 파악해 해외기술규제 관련 정보 제공, 규제자문, 맞춤형 교육, 해외인증관련 지원이다.

이번 MOU는 2023년 5월 기표원과 인천 경자청 간 MOU 체결을 통해 지원된 사업이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돼 전국 경자청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기존 인천 경자청 1곳에서 부산진해, 대구경북, 광양만권, 경기, 동해안권, 충북, 광주, 울산으로 9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진중욱 기표원장은 “기표원과 전국 경자청이 협력해 7,644개 입주기업을 총력 지원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과 경자청 입주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美 진출 우리 기업 이익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8일 주요 對美 투자기업 관계자와 함께 ‘對美 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美 대선 결과에 대한 對美 투자기업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합동 아웃리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전자,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소재화학 분야 등 주요 對美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우리 對美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 합심으로 우리 진출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작년 기준 최대 對美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美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향후 트럼프 新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차분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업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新행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면서 對美 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수출입銀, 4분기 수출 전년 동기 대비 7% 내외 증가 전망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등 수출선행지수 하락으로 증가 폭은 축소

올해 4분기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제조업 중심 수출대상국들의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선행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수출 증가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11월 4일 '2024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을 통해 올해 4분기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한 1,80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0.7%, 전분기 대비로는 1.4% 증가한 1,739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및 선박류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전분기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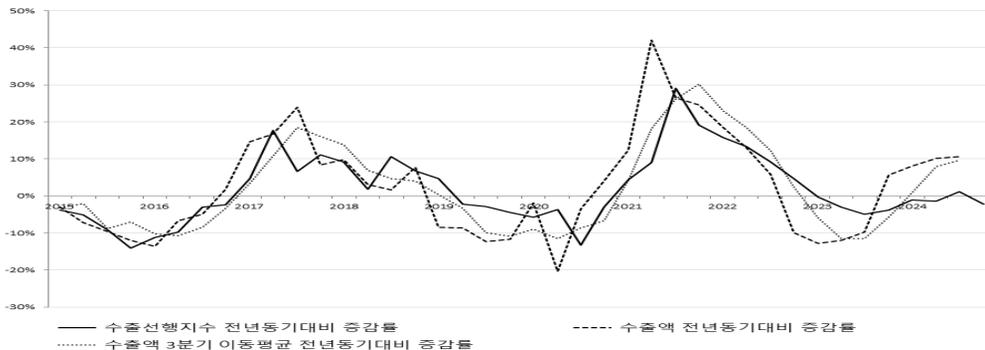
품목별로는 반도체, 선박, 무선통신, 석유화학 등이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ASEAN 등 대부분 주요 지역에서 증가했다.

4분기 수출액에 대해 수은은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 경기 부진 지속 및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로 수출선행지수가 위축되는 등 대외 여건 불확실로 올해 4분기 수출은 성장폭이 다소 축소된 7% 내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중국의 경기회복 부진이 더 심화되고,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 수출 증가 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1.0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p, 전기 대비 3.1p 하락하며 작년 동기 및 전기 대비 상승으로 전환됐던 3분기 수출선행지수가 4분기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



출처 : 수출입은행

한편 원화환율 불안정(36.7%), 중국 등 개발도상국 저가 공세(32.0%),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31.8%)가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으로 조사됐다.

| 하구현 기자 |

중기부,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접수 ... “해외 시장 진출 기여 고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받는다. 중소기업 유공자 정부포상은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포상 분야는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4개 부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제조 분야의 수출판로 개척 노력을 별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해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자세한 포상 신청 요건과 절차는 중기부(www.mss.go.kr)·중기중앙회(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5차 한·중앙아 경제협의회체 연례회의’서 협력방안 모색

11월 5일 중앙아시아 5개국 상공회의소 및 한국국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제5차 한·중앙아 경제협의회체 연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그린·스마트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의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이 주제였다.

기조발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경민 연구원은 “에너지·인프라·스마트 기술 등 국가별 협력 유망 분야에 맞는 적절한 전략 수립을 통해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김성준 수석은 ‘자원·에너지분야 비즈니스 기회 모색’ 세션 발표를 통해 “성공적인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지역 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의료 및 재난 피해 지원, 기술이전 및 현지화 등 한국기업과 현지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트랜드 신동관 이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현대화 수요 증가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통합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농업인·학생 대상 스마트팜 교육 진행 등 중앙아시아 내 효율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법 입법 방향 논의한다”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법제처는 11월 12일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The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개최한다. EU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 법제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미래법제 국제포럼에서는 EU 인공지능법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화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도 공유한다. 이와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이 ‘AI 활용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와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포럼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www.futurelawforum.kr)에서 사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일 온라인(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으로도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행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최 천 식 |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I. 들어가며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므로 관세를 증액 또는 감액 경정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없다.¹⁾ 만일 경정 처분을 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²⁾ 없는 행위이므로 당연 무효인 처분이 된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고지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³⁾인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비록 납세자가 환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환급해야 한다. 같은 논리로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착오로 이를 받아들여 지급해 준 경우 이 역시 납세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결과가 돼 세관장은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세관장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과오납 환급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수하는 데 쟁점이 될 수 있다. 물론 “과다환급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로 본다는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을 과다환급으로 보고 부당이득을 환급한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세관장이 과오납금 환급, 위약 환급, 수출용원재료 환급과 관련해 환급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환급했고 그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관세법」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에 따라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재경정으로 증액하는 것은 감액경정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입신고 등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해 새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하는 것으로 과다환급 징수와 무관하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대상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봐야 한다.⁴⁾

세관장은 납세자에게 지급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근거를 과연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관세법」⁵⁾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민법」⁶⁾에서 찾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등 다수

2) ‘법률상 원인’은 이득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다면 매매계약이 법률상 원인이 된다.

3) 부당이득반환관계는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가 아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도 법정채권관계 중 하나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이익조정에 관한 최후의 법리다.

4)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941(2012. 12. 7.)

최악의 경우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민사소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소송 제기 전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합법적 내지 합목적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민법」은 부당이득에 대해 별도의 장을 마련해 9개의 조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학계에서는 부당이득규정이 정교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⁷⁾ 그런데 공법학에서는 부당이득에 관해 논의한 역사도 민법학보다 짧고 논의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해 「민법」에 의존하는 탓에 적용 한계에 부딪치고 실무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법상 부당이득은 「민법」상 부당이득과 성격을 달리하는 공법적 개념이고 그 요건과 법률 효과도 달라서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기대어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므로 공법 영역에서의 독자적인 적용 논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 논문도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취득한 부당이득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반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하는 데 필요한 논리를 정립한 논문은 별로 없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법 내에서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지급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논거를 모색해 보고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부당이득 개념

1. 공법과 「민법」이 추구하는 이념

공법상 부당이득이든 사법상 부당이득이든 법률상 원인 없는 재화 이전은 환원돼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은 무효, 취소, 소멸시효 완성, 해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률상 원인의 유무는 재화 이전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가 된다. 따라서 공법상 부당이득의 반환도 「민법」 제741조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구성 요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41조에 실현돼 있고 공법의 영역에서도 세법 등 개별 법에서 구체화돼 있다. 「민법」상 다수설은 부당이득을 정의 또는 공평의 관념을 사상적 기초로 하는 자족적, 통일적 제도로 이해하고 대법원 입장도 공평의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⁸⁾ 「민법」상 부당이득은 ‘공평 관점’에 입각하고 있지만, 공법에서는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5)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등

6)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7) 하명호,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20. 180면.

8)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은 법치주의의 한 개념으로 행정은 법률 근거 하에 법률의 구속을 받아서 행해져야 한다는 법 원리를 말한다.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과 법에 대한 신뢰에 기인하는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법적 틀에 의해 규제하고 법에 종속시킨다는 의미를 바탕으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유보, 법률의 우위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에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컨대, 대통령이 법률에 위반되게 15세 청소년에 대해 징병검사를 명하거나 근거 없이 국민에게 세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제도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은 이익으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해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한다.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은 ①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② 타인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 ③ 손실이 발생했을 것, ④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이다. 예컨대,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준 경우 금전을 이체 받은 사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금전을 이체한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은 「민법」상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성의 교정이 아니라 보유의 정당성이라는 차원에서 부당이득자에게 손실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다. 반환 범위는 이득자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몰랐었느냐(선의) 아니면 알고 있었느냐(악의)에 따라서 달라진다.⁹⁾ 선의의 경우라면 현재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지만(「민법」 제748조), 악의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느냐 없느냐를 불문하고 이득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여기에 손해가 있으면 함께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48조).

9) 「민법」상 선의란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것을 말하며 악의는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법적 의미로서 선의, 악의는 윤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악의)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선의)의 심리 상태를 말한다.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이득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가 ‘비채변제’다. 「민법」 제742조(비채변제)에는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 금지되는 유형을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제744조(도의 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제746조(불법원인급여)에서 열거하고 있다.

3.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연혁

「민법」과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논의와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에도 19세기 말까지는 특히 재정법 영역에서 부당이득을 공법의 고유한 문제로 다루지 않고 「민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 후 공법상 부당이득에 공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공법학자 오토 마이어(Otto Mayer)에 의해 비로소 「민법」적 특성과 제한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는 독자적인 상황청구권으로 방향 전환을 이끌어 냈다. 그후 독일에서는 공법상 부당이득 본질을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으로부터 도출하고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에서 효력이 없거나 제한된 효력만 있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이론이 없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메이지시대에 조세 과오납과 같이 공법상 원인에 기해 급부된 것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했고 판례도 민사재판소 관할로 인정하고 실체법도 민법 규정을 적용했다. 전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해 이득 발생이 선행하는 행정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서 파생한 공사법(公私法)의 구별 문제가 제기됐고 그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 해당 채권에 대한 회계법의 적용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인지 아닌지라는 개별 문제로 발전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공법상의 부당이득을 기본적으로 사법적으로 취급하고 공법상 특수성을 탐구하는 정도 외에는 이에 관한 법리논쟁이 그리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다.¹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최근 사회보장 행정 영역이 관심 대상이 되기 시작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약간의 판례가 축적되고 있고 그에 관한 문헌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

10) 하명호, 전게서, 182면

2)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유형

공법상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재화의 이전 방향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의 구분은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름의 의미가 있다. ① 개인이 행정주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예컨대 조세의 과오납금이나 무효인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주체에게 행한 급부를 반환받는 관계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등 세법에서 납세자가 납부한 과오납에 대한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¹¹⁾ ②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부정수급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III.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4조 및 「관세법」 제46조, 「지방세법」 제45조와 제47조 등이 있다. 조세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로 공권설과 사권설로 구분되며 공권설로 보는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준거법을 세법에서 찾아야 하고, 사권설로 보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찾아야 한다.

1. 공권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므로 해당 청구권은 공권이라는 설이다. 다수설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공법상 원인에 기해 생긴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권의 성질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착오로 이를 받아들여 환급해 준 경우 공권설을 적용한다면 세관장과 납세자 간 과세형평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과오납금청구권과 대응하는 세관장의 관세징수권의 적극 행사 및 나아가 근원적으로 「관세법」이 추구하는 법률적합성 원칙을 적용해 환수할 수 있다. 행정주체가 개인의 부정수급 환수 문제는 공법의 영역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같은 부당이득 문제더라도 다른 공법 영역에 대해서는 사권이라고 하는 사권설과 이를 지지하는 판례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다.

공권설은 개별세법에 부당이득환수 근거 조항이 있으면 그 근거 조항에 따라 환수하는 것이고 설사 근거 조항이 없더라도 개별세법에 내재된 법원칙을 도출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개별법에서 특히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법률에서는 부당이득환수의

11)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 「관세법」 제46조 내지 제48조

근거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대량적이고 반복적인 부당이득 발생과 급여의 보전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집행 권원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¹²⁾

2. 사권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 조정을 위한 것이고 또한 부당이득 문제가 행정 행위에 의해 생긴 경우에도 그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문제가 생긴 때에는 이미 법률상 원인은 없는 것이고 또한 부당이득은 오로지 경제적 이해조정 견지에서 인정되므로 사법상의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청구권은 사권이라는 설이다.¹³⁾ 즉,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¹⁴⁾

민법학에서는 재화 귀속이 다른 제도에 의해 규율될 수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¹⁵⁾ 「행정법」에서도 행정이 행정행위나 강제집행 등 강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법정돼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통해 같은 법률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다. 대법원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를 취소한 다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¹⁶⁾

IV. 검토 의견

1. 공법상 법률적합성 원칙 접근 방법

공법상 ‘법률적합성 원칙’은 급부 제공과 관련해 적법한 재화 이전을 명하고 만일 위법한 재화 이전이 있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태로의 환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법상 부당이득

12) 이은선, ‘사회보장법상 급여처분의 변경 및 부당이득의 반환’,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113면

13) 두산백과 또는 위키백과에서는 행정법상 부당이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15)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16)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반환청구권은 재화 이전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법령 그 자체에서 도출된다고 봐야 한다. 세법은 위법한 급부를 승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현된 상황을 용인하지도 않으므로 적법한 상태로 재화를 환원할 것을 정당화한다.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에 맡길 수 없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률에 의해 승인되거나 용인되지 않는 상황을 행정에 의해 보호받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의 개인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는 그 개인에게 침익적이지만, 그 부담은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조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¹⁷⁾

공법에서는 법률관계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 형성된다. 행정과 개인의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를 공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교정하는 기능이 있다. 예컨대 행정은 위법한 급부를 행한 권한이 없고, 마찬가지로 개인은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질 의무가 없다. 이렇게 공법상 법률상 원인은 법률적합성을 의미하고 그것이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표지가 된다. 따라서 개개의 경우에 급부를 행하게 하는 법률 규정에 대해 불확정 개념이 올바르게 해석됐는지 또는 재량권이 올바르게 행사됐는지를 검토해 급부의 합법성과 위법성을 확정해야 한다. 반면 「민법」에서는 위법성을 표지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법과 다르다. 이는 양자가 서로 다른 독자적인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민법」에서는 채무변제를 위해 급부했으나 채무가 없었던 경우에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비채 변제 상황을 공법에서는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법률적합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신뢰보호의 원칙도 존중돼야 한다. 학설은 법률적합성 우위설과 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의 동위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 동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⁸⁾ 따라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는 이익형량의 문제로 행정행위의 적법성 요구가 보다 큰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납세자의 신뢰보호의 요구가 보다 큰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해 국가의 산업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제지원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부당이득금을 지원해 온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관세징수권에 대한 법 해석 접근 방법

조세부과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 요건을 구체적으로 세법에 규정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과세 요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다. 그러나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 자체가 잘못돼서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성립 요건이나 확정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많이 없다. 법적 규정도

17) 하명호, 전거서. 189면

18) 대법원 1973. 6. 26. 선고 72누232 판결 다수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과오납금 명목으로 일부 마련돼 있지만, 세관장이 청구할 부당이득에 대해 관세징수권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관세법」 제5조에서는 「관세법」을 해석할 때는 과세형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은 관세징수권을, 제2항은 과오납금청구권을 동일 선상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행사할 과오납금환급청구권과 세관장이 행사할 관세징수권은 부당이득을 대상으로 과세형평 차원에서 주체만 달리할 뿐 동일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일견 동전의 양면¹⁹⁾과 같이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 법리를 유추해석함으로써 세관장이 행사할 수 있는 관세징수권 범위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에 대해 살펴보면,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은 과오납금 등의 환급규정을 마련하고 있다.²⁰⁾ 「관세법」 제46조에서는 관세환급금에 대해 ① 오납금, ② 과납금, ③ 환급세액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	내용
오납금	처음부터 납세의무 없이 과세관청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
과납금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신고 또는 부과 후에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
환급세액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됐으나 그후에 과세권자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돼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

학설과 판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의 결정적 요건인 ‘법률상 원인의 결여’ 여부를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논리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만 제거된다고 하므로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관건은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²¹⁾ 취소할 수 있는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에 의해 이뤄진 납세액은 과납금이고 당초부터 무효인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에 의해 행해진 납세액은 오납금이다. 대법원은 오납금, 과납금,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후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다.²²⁾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세법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그 법적 성질이 부당이득

19) 동전의 양면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동전이라는 뜻이다.

20)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 「관세법」 제46조 내지 제48조

21) 남하균, '과오납 조세 등 공과금의 부당이득반환과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법연구> 제53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 29면

2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반환의무가 아니라 세법 규정에 의해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로 봤다.²³⁾ 반면 환급세액을 제외한 과오납금은 여전히 실체법이나 절차법 적용에서 「민법」이 적용되는 사법상 의무로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해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²⁴⁾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지급한 부당이득의 정의 또는 청구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관세법」 제22조에서는 관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도 납세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과오납금의 환급청구 기산일은 규정돼 있지만, 세관장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에 대한 기산일도 빠져있다. 즉 같은 부당이득인데도 납세자가 환급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하다는 점에서 양자 간 권한행사에 대한 해석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 세관장과 납세자 간 권리행사 방법 ●

주체	공법상 채권·채무	부당이득	행사기간
납세자	경정청구권(법 제38조의3)	과오납금청구권(법 제46조)	5년
세관장	관세부과권(법 제21조)	관세징수권 규정 불명확	5년 ²⁵⁾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권능을 ‘부과권’이라 하고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을 ‘징수권’이라고 한다.²⁶⁾ 세관장이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세납부에 대한 청구나 독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물건을 확정하는 것이며, 징수권은 부과권 행사로 확정된 관세를 납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²⁷⁾ 따라서 확정되지 않는 관세액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없다. 납세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과오납금 역시 세관장으로부터 확정처분을 받지 않으면 납세자는 과오납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세법」 제22조 제1항은 관세징수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납세자의 과오납금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납세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과오납금청구권에 대응되는 세관장의 권리는 관세징수권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23)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

2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25) 관세부과권은 납세자 부정이 개입된 경우 예외적으로 10년, 징수권은 5억 원 이상이면 10년으로 돼 있다.

26)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

27)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제적법적인 부과권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징수권을 각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납세자가 행사하는 과오납금의 확정과 관련해 오납금은 납부한 시점에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되는 반면, 과납금은 세관장이 감액경정 등 처분의 공정력을 없애거나 쟁송 결과에 따라 취소됐을 때 확정된다.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심사 결과, 당초 신고한 세액에 증액처분 또는 감액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그 증감 여부에 따라 세관장의 관세징수권 또는 납세자의 과납금환급청구권이 발생한다. 관세징수권은 신고납부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에 행사할 수 있고 부과지물품인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 날에 행사할 수 있다.²⁸⁾ 세관장의 감액경정으로 인한 환급인 경우에는 납세자는 과납금환급청구권을 경정결정일에 행사할 수 있고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인 경우에는 오납금환급청구권을 그 납부일에 행사할 수 있다.²⁹⁾

예컨대 납세자가 관세 0%가 부과되는 물품을 8%로 신고했을 때 납세자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수용해 ‘감액경정처분’을 했을 때 과납금이 발생·확정되며 만일 세관장이 과납금을 되돌려 주지 않았을 때에는 과납금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관세 8%가 부과되는 물품을 0%로 신고했을 때 세관장은 ‘증액경정처분’이라는 관세부과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 증감된 세액을 확정해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관장의 경정처분 결과, 세액 감소분에 대해서는 과납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세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관세징수권이 발생한다.

과납금은 이와 같이 신고, 경정, 결정 등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확정세액이 과다해 과세처분의 취소, 감액, 경정, 결정 등으로 감소된 세액을 말한다.³⁰⁾ 반면, 오납금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징수된 경우와 같이 납부나 징수할 때 이미 법률상 원인이 없는 세액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만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대표적인 무효 사유로는 신고액 이상으로 납부한 경우,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기해 납부된 경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 납부된 경우 등이 있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해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용해 환급한 사건에서 세관장이 환급한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세관장이 행한 경정처분이 무효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세관장의 처분 효력이 법리적으로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다룰 때 적용되는 법리가 ‘중대명백설’이다.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어떤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그 행위는 무효다. 그러나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혹은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28)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29)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30)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중대하다’는 것은 중요한 법률 요건 위반이고 ‘명백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에 따른 명백함이다. 일반적으로 문서상 나와 있는 규정(법 또는 기타 관계자 모두가 아는 규정)은 명백하다고 간주된다.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³¹⁾

세법에 대해 일반 상식이 있는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세관장과 납세자 간 관세에 대한 권력적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세관장이 채권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중대한 법률 요건 위반으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해 납세자 또는 세관장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채권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³²⁾

부과제척기간 경과와 관련해 세 가지 상황을 예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해 수정신고하고 그후 수정된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사례이고 두 번째는 세관장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해 증액처분한 사례이며 세 번째는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확정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고 세관장이 착오로 인해 환급해준 사례다. 물론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첫 번째 사례는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해 수정신고한 행위는 무효 사유가 되므로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관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청구권을 행사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사례 역시 세관장이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해 증액경정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되므로 납세자는 「관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청구권을 행사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사례의 경우 세관장이 착오로 환급해 준 세액 역시 부당이득으로 관세징수권을 행사해 환수해야 함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발생한다.

● 과오납금 발생 원인과 세관장의 관세징수권과 비교 ●

부당이득 종류	발생원인	세관장의 대응권
과납금	과세처분 취소, 경정 등	관세징수권
오납금	당연 무효	규정 불명확

3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다수

3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등 다수

그러나 증액경정처분을 원인으로 해 발생하는 관세징수권은 감액경정처분을 원인으로 해 발생하는 과납금청구권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 등 무효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오납금과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세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에 합의된 관세징수권의 축소 해석 및 세관장과 납세자 간 과세형평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중대명백설을 적용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세관장의 어떤 행위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무효 사유에 해당되면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세법체계 또는 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

정리하면 세관장이 행사하는 관세징수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납세자가 행사하는 과오납금 청구권과 대응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납세자가 당연무효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동일 선상에서 그 반대로 세관장이 당연무효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관세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납세자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는 곧 관세징수권에서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다고 해 「관세법」을 배제하고 「민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관세법」 제22조 제1항의 취지를 왜곡할 뿐더러 다음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쟁점이 발생된다.

3. 「민법」 규정 시 문제점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환급해 줬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세관장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을 때 두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는 납세자가 「민법」에 규정한 ‘비채변제’ 규정을 내세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는 반환금액에 대한 범위와 관련해 납세자가 선의 또는 악의 납세자인지 여부에 따라 이자 및 손해배상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선·악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법」을 적용할 때는 공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법률적합성 원칙과 신뢰 보호 원칙을 따질 실익은 없다.

우선 「민법」의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로 급부를 했으나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하지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 반환을 제한할 수 있는 ‘비채변제’ 제도가 있다. 비채변제는 넓은 뜻으로는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 좁은 뜻으로는 변제자가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742조(비채면제)에서는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좁은 뜻의 비채변제 규정으로

이는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를 한, 그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한 자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취지다. 「민법」은 이러한 좁은 뜻의 비채변제 이외의 기한전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 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에 관한 특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칙 조항을 살펴보면, 첫째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해 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3조), 둘째,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4조), 셋째,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³³⁾ 넷째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6조).

위 규정들을 역으로 정리하면, 비채변제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으로 ① 변제 행위 당시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것, ② 변제로서 급부했을 것, ③ 변제자가 변제 당시에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 ④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 있다. ⑤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 ⑥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이다. 입증책임과 관련해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주체는 반환청구권자다. 채무가 없다는 사실은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이므로 변제자가 입증해야 하고, 반면 변제자가 변제 당시 채무 부존재를 이미 알았다고 하는 점은 변제받은 자가 입증해야 한다.

「민법」에 적용되는 ‘비채변제’ 개념을 「관세법」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납세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세관장의 반환 요구에 대해 거부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이 부당이득금 지급 당시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급 행위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지급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세관장과 납세자 간 힘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납세자가 입증하기에는 매우 힘들다. 세관장 역시 납세자가 주장한 내용이 「민법」에서 규정한 비채변제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공무원과 납세자가 밀착이 없는 한, 부당이득 지급 당시 세관장이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인지 가능성 그리고 도의관념 및 불법원인급여 등의 법리는 공법상 법률적 합성과 과세형평 및 신뢰보호를 추구하는 행정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청구금액의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 채무자가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제748조는 선의 수익자에 대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지우며(제1항), 악의 수익자에 대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33) 이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45조).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한다(제2항). 즉,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문제 해결에 관해 「민법」에서는 제748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익자는 손실자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반환 범위에 대해 「민법」 제748조는 수익자의 선의와 악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원인이 없고,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익인 줄 모르고 이득을 얻은 사람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며, 이를 알고도 이득을 얻은 사람을 ‘악의의 수익자’라고 한다.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즉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다.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나아가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원리가 공법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유효하다고 믿고 보유한 수익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반대로 이득 소멸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등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사법상 특수한 법리를 구체화한 「민법」 조항을 세관장과 납세자 간 조세 채권에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공법영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법」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존재와 그 범위는 「민법」 제748조에 의해 수익자의 선의와 악의에 따라 달라지나 공법에서는 「민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예컨대 세관장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수입 건에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지급받을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됐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나아가 지급 당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러한 악의의 납세자에게 부당이득과 이자 외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민법」에서는 선의와 악의에 따라서만 반환의 범위가 달라지나 공법에서는 신뢰보호가치성 여부가 중요하다.

4. 부당이득 가산금 징수 및 가산금 범위 문제

세관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과오납금을 되돌려 줄 때 「관세법」 제48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을 더해야 한다. 반대로 세관장이 과다환급을 징수할 때도 「관세법」 제47조에 따라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한다. 납세자가 취득한 부당이득과 세관장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상대방에게 되돌려 줄 때는 「관세법」에 따라 같은 비율의 환급가산금을 더 붙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관세법」의 취지다. 즉 세관장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는 환급가산금을 붙여 지급하고 그 반대로 납세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붙이지 않는다면 「관세법」 제5조의 과세형평 및 「관세법」 제47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대해 「민법」을 적용할 경우 「민법」 제748조에 따라 납세자가 선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악의인 경우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적용하는 법이 세법인지 「민법」인지에 따라 이자율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민법」을 적용하더라도 납세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가산금에 영향을 받는다. 「관세법」에서 가산금은 연 1,000분의 35³⁴⁾이고 「민법」에서 법정이자율은 연 5%로 돼 있다는 점에서³⁵⁾ 관세환급가산금과 「민법」의 법정이자율 간 괴리가 심하다.

대법원은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을 시작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해 이행 청구를 한 후에는 법정이자율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민법상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즉 국가가 국세환급금 반환의무를 부인하는 등의 이유로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납세자가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그후부터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인 환급가산금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동시에 존재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로, 대법원은 이 경우 납세자의 법정이자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황남석(2020)은 과오납금반환청구의 문제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로 인해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에 의해 규율하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 역시 손해배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청구권이 경합한다기 보다는 법조경합에 의해 환급가산금 규정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 및 법치국가원리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³⁶⁾

법치국가원리는 ‘자의적인 통치를 억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국가작용이 행해지도록 하는 국가질서의 원리’를 의미한다. 만일 대법원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국가에 대한 조세부담의 크기가 임의로 달라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 법치국가원리의 기본 전제인 법규가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사인 간에 스스로 이익과 위험을 계산·판단해 체결하는 계약에는 사적자치원칙이 적용된다.

34)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35) 「민법」 제379조

36) 황남석,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사법> 제1권 제52호, 사법발전재단, 2020. 727면

사인 간의 거래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 약정이자를 정할 경우 법정이자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법정이자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국세환급금의 경우 약정이자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고 사전약정에 의해 법정이자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없다. 이처럼 사적자치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법률관계에 사적자치를 전제로 하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의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법 적용에 다름 없다라고 생각된다.³⁷⁾ 세관장의 입장에서도 납세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에 있어서 관세법상의 환급가산금과 민법상의 지연손해금청구권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면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민법」상의 지연손해금청구권을 선택할 것이며 그 결과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세관장의 선택적 징수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에 맞지 않는다.

5. 소멸시효 문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5년이다. 반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손실자가 수익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의 수단으로 그 이득을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³⁸⁾ 세관장이 행사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즉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게 된다면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돼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부당이득을 환수하든 납세자가 과오납 환급을 받든 모두 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로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는 세관장의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경정결정일을, 제2호에는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그 납부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제1호 규정은 과납금 소멸시효 규정이고 제2호는 오납금 소멸시효 규정이다. 납세자는 어떤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시점에서 그것이 오납금에 해당하는지, 과납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오납금은 무효 사유에 의해, 과납금은 취소 사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는 일반인은 물론 법률전문가도 쉽지 않은 문제이며 때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예로서 대법원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 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37) 황남석, 전거서, 728면.

38)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9헌바129 전원재판부 결정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³⁹⁾ 그 당시 피고 세관장은 수정신고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납금은 납부한 시점부터 확정된 것으로 보고 납부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오납금청구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⁴⁰⁾ 관세행정실무에서 오납금이라 하더라도 과납금의 환급절차와 동일하게 전산시스템 상에서 세액에 변동은 가하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절차를 밟아 환급이 이뤄진다. 따라서 오납금의 소멸시효도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소송의 형식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 종류에 대해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세관장의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는 항고소송 외에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납부했으므로 국가를 대상으로⁴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하라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법상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행정주체가 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정행위로서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행정주체가 개인에게 소비된 급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를 발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법률의 수권이 없는 경우 행정주체의 반환청구권 행사는 개인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반환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없고 민사소송 일종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당사자소송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인데 반해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우리나라 법원은 조세과오납에서의 반환청구권과 같이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권설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3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40) 김태호, '조세 환급요건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8. 441면.

41) 납세자가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가 된다.

94다51253(1995. 12. 22.) 판결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이 외에도 94다55019(1995. 4. 28.) 판결을 통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수설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공법상의 원인에 기해 생긴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법적인 것이므로 공권의 성질을 가진다는 공권설에 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잘못 납부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적 성질에서 기인하는 사권이 아니라 공법상 의무에서 도출되는 공권으로 보고 기존의 판례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세환급금 반환청구가 아닌 조세과오납에 의한 반환청구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본 기존 판결을 변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후에 선고된 판결에서는 과오납금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⁴²⁾

판례의 이와 같은 태도는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을 소송물을 기준으로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소송물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하므로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권으로 봐야 한다.⁴³⁾ 세관장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한 사건의 경우 그 환급금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세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부당이득 반환법 위 내지 소멸시효 기간도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납세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못해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해야 한다.⁴⁴⁾ 만일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사권으로 본다면 국가는 세법상 우선권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국가가 행사하는 조세채권은 재정확보를 위해 세법상 우선권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공평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합성 원칙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성립과 행사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사법상 계약에 의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이것을 보증하게 해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해 조세채권의 궁극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⁴⁵⁾ 이러한 점에서 거래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사적

4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43) 하명호, 전거서, 194면

44) 「관세법」 제2장 제5절 제2관(강제징수 등)에서는 압류·매각의 유예조항(제43조의2)만 두고 있고 정작 강제징수 절차규정은 빠져 있다. 따라서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치원칙에 따라 체결되는 사법상 계약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국가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강제적·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세법상의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적어도 세법상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따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세법규정 및 공법상에 적용되는 신뢰보호 원칙을 논리 전개 시 사용할 수 있다.

V. 정책적 제안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법규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이뤄진 관세의 채권 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납세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과오납금청구권 또는 국세환급금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 「관세법」 제46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돼 있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 세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세관장이 무효 사유로 인해 납세자에게 지급한 부당이득은 관세징수권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 법 제38조에 따라 ... <중략> ... 로 한다. ... <중략> ... 4. 법 제253조에 따라 ... <중략> ... 다음 날. 5. 그 밖의 법령 ... <중략> ... 다음 날.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 ... <중략> ... 4. 좌동 5. 무효 사유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한 부당이득은 지급한 날의 그 다음날 6. 그 밖의 법령 ... <중략> ... 다음 날.	제5호 추가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무효와 취소 판단이 어렵고 오납금도 전산시스템에서 경정 작업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해 오납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과납금과 같이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해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개정도 제안하고자 한다.

VI. 맺는 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물품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므로 납세자가 수정신고한 금액 또는 과세관청이 착오로 환급해 준 금액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45)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수정신고한 금액은 「관세법」에 과오납금으로 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세관장이 환급해 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부당이득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세법에 따라 발생된 부당이득은 세법이 추구하고 있는 과세평형과 관세징수권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및 법률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해 세관장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관세행정 실무에서는 현재까지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지급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데 있어 민원 마찰이나 쟁송사례는 거의 없다.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부당이득은 주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 감정이나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행이나 법 해석에 의존해 처리하기보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징수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 신설 등을 통해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제화를 통해 「관세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은 「관세법」 내에서 해결해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사인 간에 적용되는 「민법」을 적용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법제화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사권설과 민사소송을 지지하는 사법부에게 입장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FTA / 한·영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영국의 수출자에게서 전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의 연도가 87로 표기돼 있는데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영 FTA에서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 번호 체계 : 국가코드(2) / 인증번호(5) / 인증연도(2) (예시) GB12345/21

인증수출자 번호상 인증연도가 '87'이라면 한·영 FTA 발효 전에 해당하므로 FTA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 및 관세청 담당 부서(FTA 집행과 042-481-3221)에서 안내 받기 바랍니다. 세관 담당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청 소개 > 조직 및 직원안내 > 직원안내 > 이름/주요업무로 찾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품목분류 / 자일리톨 캔디의 HS Code

자일리톨 98% 캔디는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제1704호에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70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예시로 "(d) 단과자(sweets)·검(gum)과 이와 유사한 물품(특히 당뇨병 환자용)으로서 설탕대용으로 합성감미료[예 : 소르비톨(sorbitol)]를 사용한 것(제2106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06호 해설서에서 “(9) 단과자·껌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특히 당뇨병 환자용의 것)으로서 설탕 대용의 인공감미료(예 : 소르비톨)를 함유하는 것”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2106.90.9099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입 / 조경용 나무 묘목의 수입요건

제0602.90-2090호에 분류되는 조경용 나무 묘목의 수입요건이 알고 싶습니다.

관세율표에서 제0602호에는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이 분류되며, 제0602.90호에는 ‘기타’, 제0602.90-20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되고 있습니다. 제0602.90-2090호에 분류되는 조경용 기타 나무 등을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통합공고 별표6에 계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계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환급 / 물품 반품 시 환급 신청

자가 사용할 물품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한 뒤 단순 변심으로 모두 반품하고자 합니다.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는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사례가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개인 대상의 환급 제도로 사업자물품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수출에 대해 규정한 「관세법」 환급 절차는 없습니다.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한 물품이 계약과 다른 물품으로 배송됐거나 불량 상태일 때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신고(계약

상이수출 '93' 수리 후 국내에서 반출된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원상태수출로 인한 환급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수입된 물품을 수출신고(원상태수출 거래구분 '72')해 수리된 경우 관세에 대해 환급하는 것입니다.

'원상태수출'이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를 환급 받으려면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포함) 등과 수출신고필증상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한 제품을 단순 변심으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송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환급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급 관련 심사 및 결정 권한은 환급을 신청하는 세관 환급 담당자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의는 가까운 세관 환급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통관 /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차 매실 장아찌(과채 절임류)를 해외 직접 구매(직구)하려고 합니다.
구입하려는 물품이 국내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직구 시 개인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을 확인하려면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분류는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주시고 분류된 품목번호로 수입요건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검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출국·사용량·용도 등을 확인해 소관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특송물류팀(식물) 032-744-5566]에서 안내 받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

-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www.customs.go.kr/cvnci/main.do) >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 042-714-7535)

■ 품목번호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 방법

- ※ 인터넷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검색'에 HS Code 입력 후 조회
- ※ 인천공항세관 특수통관 2과 : 032-723-5203~7/5228, 032-722-4825(1과), 032-723-5274, 5258, 5252(3과)
- ※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2127~9(민원 담당)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관세법」상 판매자를 확정한 판례 해설

권종열 | 서울세관 심사총괄2과

1. 사건 경위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다. 미국 본사가 원고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속한 H 그룹은 세계 약 〇〇개국에 진출해 약 〇〇〇만 명의 다단계 판매원을 확보하고 있는 다국적 다단계 판매 기업집단이다.

나. 원고는 H 제품의 상표 및 제조공법(레시피) 등 기술정보를 보유한 미국 본사와 19〇〇. 〇〇. 〇〇. 미국 본사가 국내에서 H 제품의 제조 활동에 필요한 특정 기술정보 등 무형자산의 사용을 원고에게 허락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국내에서 제조된 H 제품의 매출에 근거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지원 계약’이라 한다)을, 19〇〇. 〇〇. 〇〇. 미국 본사가 원고로 하여금 H의 시스템을 이용해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미국 본사의 영업 계획, 판매원 네트워크, 미국 거래 기밀, 노하우, 저작권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미국 본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H 아메리카와 19〇〇. 〇〇. 〇〇. 경영지원서비스계약(Administrative Services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이 사건 지원계약은 원고가 H 아메리카로부터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직·간접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받고, H 아메리카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 원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미국법인 〇〇, 〇〇, 〇〇 등(이하 ‘이 사건 각 공급업체’라 한다)과 개발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급업체를 공급자로 해 수입신고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외 〇〇〇건의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하고,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공급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舊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실제 수입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더해 조정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는 방법으로서 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서 잠정가격 신고를 했으며, 그후 각 수입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년도 6월까지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확정가격을 신고했다.

라. 피고 〇〇세관장은 원고에 대한 실지심사(이하 ‘이 사건 실지심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는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아닌 H 아메리카인데, 이

사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원고와 H 아메리카 간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舊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② 거래관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존재한다[같은 법 제30조 제5항 제3호, 舊 「관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고 2013. 11. 15. 대통령령 제2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舊 「관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가격에서 동종·동류 수입물품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해 2000. 0. 경부터 0. 경까지 원고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 요구’라 한다)한 후 5차에 걸쳐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 중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의 00건의 수입분에 대해 피고 00세관장에게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각 4% 및 6%를 적용해 수입신고했다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후인 2000. 00. 00.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되, 제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에 따라 산정된 관세 00000원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원고는 다시 피고 00세관장에게 위 수정신고·납부세액이 제4방법에 따라 과다 산정됐음을 이유로 그 세액 중 일부인 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 00세관장은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0. 00. 00.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00000원과 관련해 舊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피고 00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00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발급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이라 한다), 이 사건 발급거부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했으나, 각 기각됐다.

아.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했고(서울행정법원 2021. 2. 17. 선고 2019구합54917 판결), 2심에서도 원고가 일부승소했으며(서울고등법원 2022. 5. 10. 선고 2021누38613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대법원 2022. 9. 29.자 2022두45470 판결).

2. 원고 주장의 요지¹⁾

관련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문언, 이 사건 수입물품의 소유관계, 위험부담 주체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은 H 아메리카가 아니라 이 사건 각 공급업체임이 분명하다.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외관과 형식을 실질과 달리 구성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실질과 세원칙을 적용해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H 아메리카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H 아메리카 간 특수관계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3. 대상 판결의 요지

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를 때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입물품의 판매자는 비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H 아메리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1) H 아메리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 해당 제품의 기획, 개발, 생산(주문 및 품질관리, 생산업체 선정, 가격 협상), 판매 등 전반을 통제·관리했다.

2) 이 사건 각 공급업체 역시 H 아메리카가 기획한 제품을 그대로 생산하기만 하는 극히 단순한 생산 업무만 수행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H 아메리카로부터 하청을 받아 이 사건 수입물품을 생산한 뒤 H 아메리카에 공급해 온 H 아메리카의 하청업체에 불과해 보인다.

3)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원계약의 대가로 원고가 H 아메리카에 지급한 경영지원 비용 중 이 사건 수입물품과 무관하게 통상적인 업무지원 비용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지원계약을 통해 H 아메리카로부터 지원받았다는 경영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체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1) 이번 호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다.

4) 이 사건 공급계약상으로는 수입물품이 현지 인도지점(공급자의 캘리포니아 소재 도크 또는 H 그룹의 LA 유통센터)에 인도되는 때에 그 수입물품의 손실 위험 및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 사건 거래의 실제 이행 내용 즉, H 아메리카가 미국 내 운송 비용, 보험료 등을 부담한 후 원고에게 Assist Invoice를 발행한 점, 현지 인도지점 중 하나인 LA 유통센터는 H 아메리카가 소유하고 있고, 그 유통센터에 도착한 수입물품은 H 아메리카에 의해 원고에게 운송되도록 선적이 주선돼 온 점 등에 비춰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와 위험이 H 아메리카에 이전됐다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원고와 H 아메리카, 이 사건 각 공급업체(또는 해외 생산자) 간 법률적·경제적 관계²⁾는 2001년 과세처분 이전과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단지 원고는 H 아메리카 대신 이 사건 각 공급업체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선하증권상 송하인 명의를 H 아메리카에서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 변경했을 뿐이다(대만, 태국 판매법인을 제외하고는 H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경우는 없다).

6)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아니라 H 아메리카에 의해 이행돼 왔는바, 이 사건 공급계약은 그러한 실질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7)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형식적 소유권 개념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해당 물품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지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나. 관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실질과세원칙 적용 요건이 되는 ‘관세회피의 목적’은 과세대상 거래 형식의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아울러 관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인정된다면 족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춰 원고가 2001년 과세처분 이전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즉, 이 사건 공급계약의 상대방)을 H 아메리카가 아닌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 한 데에 특수관계를 은닉하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1900. 00.경부터 2001. 00.경까지는 이 사건 각 공급업체와 같은 해외 생산자가 제조한 제품을 H 아메리카로부터 수입해 오다가, 피고의 2001년 관세조사 및 그에 기반 관세 등 부과처분(이하 ‘2001년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후로는 그 거래의 형태를 해외 생산자로부터 H 아메리카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4. 대상 판결에 대한 해설

가.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³⁾

「관세법」은 명문으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종전에는 「관세법」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2두8442 판결⁴⁾에서 「관세법」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고,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보인다.⁵⁾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의 기본 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⁶⁾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적용해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를 실질에 맞게 재구성하려면 납세의무자인 거래당사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다른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이 되는 ‘조세회피의 목적’은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 형식의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⁷⁾

반면,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⁸⁾

3) 소순무·윤지현, 「조세소송」, 조세통람, 2022., 804면

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8591 판결 등

6)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7)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348 판결

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나. 관세평가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판결

최근에는 납세의무자 판정 시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해당 여부, 실질적 판매자와의 특수관계 영향 여부 등 관세평가 분야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뤄지는 거래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그 자회사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두9508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제조자이고 A社は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구매대리인이며, 원고가 A社에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인정한 이와 같은 사정을 기록에 비취 살펴보면, 원고가 A社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 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

미국 본사가 단순한 구매대행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 개발 비용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5) 서울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0누59286 판결⁹⁾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관여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제3국 위탁생산자가 아니라 G社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 수입에 관한 거래당사자를 G社로 본다면, G社가 원고에게 매월 발행하고 청구한 미지급금액이 이 사건 물품 수입의 거래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대상 판결 쟁점의 정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와 같은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 시 이 사건 물품의 판매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다. 즉, 형식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판매자인지, 아니면 이 사건 거래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이 H 아메리카가 맞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H 아메리카가 판매자인지가 쟁점이다. 만약 이 사건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라면, 구매자인 원고와 판매자인 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H 아메리카라면, 구매자인 원고와 판매자인 H 아메리카는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더 나아가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검토해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실질과세원칙의 법리, 즉 조세회피 목적 등이 있다면 실질에 맞게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을 뿐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는바¹⁰⁾, 이 사건 수입물품을 실질적으로 H 아메리카가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 등이 있어야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H 아메리카를 판매자인 것으로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 등이 없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업체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판매자가 돼야 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이번 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판결의 쟁점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

9) 대법원 2022두45647로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다.

10)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34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판매자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인지 아니면 H 아메리카인지 여부와, 보다 구체적으로는 i)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이 누구지, ii)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다.

라.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H 아메리카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기획, 개발, 생산(주문 및 품질관리, 생산업체 선정, 가격 협상), 판매 등 전반을 통제·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은 비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H 아메리카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이 되는 ‘조세회피의 목적’은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 형식의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바¹¹⁾, 이 사건 거래와 2001년 과세처분 이전과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이 사건 계약을 H 아메리카가 아닌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 한 것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이거나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는 특수관계인인 H 아메리카이고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바, 원고와 H 아메리카 간 특수관계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대상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최근 국제 무역은 글로벌 추세로 독립적인 수출자 및 수입자의 매매 계약에 의해 성립이 되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전 세계 주요한 곳에 조직을 구축해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이들 상호 간에 의해 성립되는 다국적기업 간 무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¹²⁾,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아웃소싱 전략은 자신의 핵심 역량만 남기고 나머지 활동은 외부의 전문기업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고, 그 중 전형적인 형태는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소재하는 제3의 제조업체를 하청업체로 선정해 물품을 생산하게 하고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해당 국가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다.¹³⁾ 이 사건 거래도 이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전형적인 생산거점 아웃소싱 형태와 유사한바, 대상 판결은 향후 다국적기업 간 무역에서 거래의 실질 파악과 이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 가능 여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1)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348 판결

12) 이용수,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관한 효과적 관세평가방법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1면

13) 최천식,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전략에 대응한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58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의 품목분류

최 민 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

I. 개요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로봇이 개발된다면, 로봇의 역할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일반적인 기계처럼 정해진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탑재한 로봇은 자율적이고 사람과 더 깊이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우선 기존 로봇은 미리 설정된 명령에 따라 정해진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AI 로봇은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분석해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이나 드론은 장애물을 피하고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도달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은 로봇의 역할을 단순 보조에서 독립적인 작업 수행자로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자연어 처리(NLP, National Language Processing)와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같은 AI 기술이 접목되면 AI 로봇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로봇은 고객의 질문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답을 제시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 로봇은 환자의 감정을 인식해 공감하고 위로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감정에 반응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AI 로봇은 다양한 산업에서 큰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예를 들어 농업에서는 농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불량 제품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정하는 능력으로 생산라인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동화는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불어 AI 로봇은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학습하는 능력을 습득할 것이다. AI 로봇은 수집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하고 정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고객 지원 로봇이 과거 상호작용 데이터를 통해 자주 하는 질문을 예측하고 더 나은 답변을 제시하는 식으로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AI 로봇은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고위험 환경에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방사능이 높은 지역, 심해, 우주 같은 곳에서 AI 로봇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는 긴급 구조나 재난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크게 열어준다.

AI 기능을 탑재한 로봇은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로봇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로봇과 구성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각종 로봇들 ●



II. 로봇

□ 로봇의 작동 원리

로봇의 작동 원리는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먼저 로봇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고 센서는 외부의 정보를 수집해 로봇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 제어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데, 제어 시스템은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석해 로봇의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으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방식과 각 구성 요소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분산형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로봇의 AI 및 알고리즘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는 로봇이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 로봇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구동 시스템은 그후 로봇의 움직임을 실제로 구현하는 단계다. 구동 시스템은 모터를 사용해 로봇의 팔, 다리, 바퀴 등을 움직인다. 제어 시스템에서 받은 명령에 따라 정확한 위치와 속도로 로봇의 각 부분을 움직이게 하며, 이는

로봇이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로봇의 전반적인 동작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다. 마지막으로 로봇은 외부와의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로봇의 주요 구성품

로봇의 구성품은 로봇의 용도와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나뉜다. 각 구성 요소는 특정 기능을 담당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 로봇이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구조와 프레임

로봇의 외부를 형성하는 기본 뼈대는 금속, 플라스틱, 복합 재료로 만들어지며 로봇이 어떤 형태로 설계됐느냐에 따라 바퀴, 다리, 팔 등 다양한 구조가 포함될 수 있다.

2. 동력 시스템

로봇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대부분 로봇은 배터리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지만, 일부는 태양광, 연료전지, 전원 공급 장치 등 다양한 동력원을 사용할 수 있다.

3. 모터 및 액추에이터(Actuator)

1) 모터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해 로봇의 움직임을 만드는 장치다. 모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작동 원리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모터는 DC 모터, 서보 모터, 스테퍼 모터 등이 있다.

DC 모터는 직류 전류를 사용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고 이 자기장이 영구 자석과 상호작용해 회전 운동을 만든다. DC 모터는 속도 제어가 용이하고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덕분에 소형 로봇에 많이 사용된다.

서보 모터(Servo Motor)는 특정 위치 제어가 필요한 경우 사용되며, 위치·속도·가속도를 매우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서보 모터는 회전각이 제한돼 있으며, 제어 시스템과 연결된 피드백 센서를 통해 원하는 각도만큼 정확히 회전한다. 주로 로봇 팔이나 관절 등 정밀한 움직임

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스텝퍼 모터(Stepper Moter)는 단계마다 고정된 각도로 회전하는 모터로 디지털 신호에 따라 단계별로 회전한다. 스텝퍼 모터는 회전각이 정확하게 제어되기 때문에 위치 제어가 필요할 때 유용하다.

● 각종 로봇에 사용되는 모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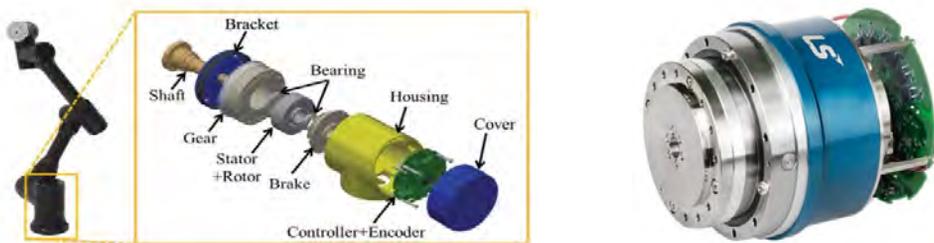
2)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는 전기적, 유압적, 공압적 에너지를 이용해 직선 운동 또는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모터는 회전 운동을 주로 하지만, 액추에이터는 회전 외에도 직선 운동을 수행할 수 있어 로봇의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

먼저 전기 액추에이터는 전기를 사용해 구동되는 액추에이터로 전자기 유도나 전기 모터의 원리를 이용해 특정 방향으로 운동을 만든다. 로봇의 관절이나 특정 위치에서 이동이 필요한 부위에 사용된다.

유압 액추에이터는 유체 압력을 이용해 힘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고압의 유체가 실린더를 통해 피스톤을 움직인다. 큰 힘이 필요한 산업용 로봇이나 건설 로봇에 주로 사용된다. 공압 액추에이터는 압축 공기를 사용해 구동되는 액추에이터로 유압 액추에이터보다는 출력이 낮지만, 가볍고 빠르게 반응해 작은 로봇이나 물체를 정밀하게 움직일 때 사용된다.

● 각종 로봇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 ●



4. 제어 시스템

로봇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나 임베디드(Embedded) 컴퓨터를 사용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터나 센서를 제어한다. 제어 시스템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포함돼 로봇이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5. 센서

로봇에 사용되는 센서는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로 로봇의 자율성과 작업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봇에 사용되는 주요 센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접 센서(Proximity Sensor)

- 적외선 센서(Infrared Sensor) : 적외선 빛을 발사하고 반사된 신호를 감지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며 근접한 물체를 감지하거나 장애물을 피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 초음파 센서(Ultrasonic Sensor) : 초음파를 발사하고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나 위치를 계산한다. 거리 측정이 정확하고 적외선보다 다양한 재질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 장애물 감지, 거리 측정 등에 유용하다.

● 근접 센서 ●



2) 카메라 센서(Camera Sen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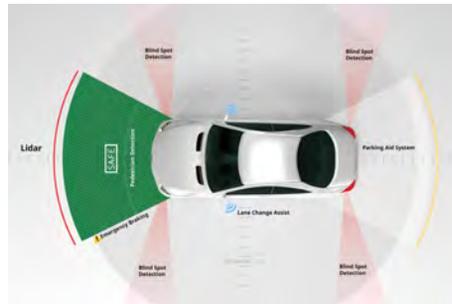
- RGB 카메라 : 일반적인 색상 카메라로 이미지를 촬영해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에 의해 물체를 인식하고 위치를 파악하는데, 주로 얼굴 인식, 물체 탐지, 자율주행 등의 작업에 사용된다.

- 깊이 센서(Depth Sensor) : RGB 카메라와 거리 센서를 결합해 3D 환경을 인식하는 센서로 물체와의 깊이를 측정해 물체의 위치와 형태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어 주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물체 탐지에 사용된다.

3) 라이다 센서(LIDAR 센서, Light Detection and Ranging Sensor)

레이저를 발사하고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환경의 3D 맵을 생성한다. 고정밀의 거리 측정이 가능해 자율주행 로봇, 드론, 산업용 로봇 등에 주로 사용된다.

● 라이다 센서 ●



4) 힘 및 토크 센서(Force and Torque Sensor)

힘과 회전력(토크)을 측정해 로봇 팔이나 집게에 장착돼 작업 대상에 적절한 힘을 가하도록 도와주므로 주로 로봇 팔이 물체를 다루거나 조립 작업에서 섬세한 힘 조절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5) 가속도 및 자이로 센서(Accelerometer & Gyroscope Sensor)

- 가속도 센서 : 로봇의 움직임 방향과 가속도를 감지해 로봇의 이동 상태나 속도 변화를 파악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 자이로 센서 : 각속도와 회전 방향을 측정해 로봇의 방향과 기울기를 감지해 주로 이동형 로봇이나 드론의 안정적인 자세 제어를 위해 사용된다.

6) 온도 및 습도 센서(Temperature & Humidity Sensor)

환경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로봇이 특정한 환경 조건에 맞게 동작하도록 해 주로 스마트 농업 로봇이나 공장 자동화 로봇에서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해 온도나 습도에 맞게 작업을

조정할 때 사용된다.

● 온도 센서(좌)와 습도센서(우) ●



7) 터치 센서(Touch Sensor)

물체와의 접촉을 감지하는 센서로 주로 로봇 팔의 손가락 끝이나 집게 부분에 장착돼 물체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힘으로 물체를 다룰 수 있게 도와준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소셜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에도 사용된다.

8) 마이크 및 음향 센서(Microphone & Acoustic Sensor)

소리를 인식해 로봇이 음성 명령을 이해하거나 특정 소리를 감지하게 한다. 소셜 로봇이나 가정용 로봇에서 음성 인식 및 음성 대화를 위한 필수 장치다.

9) GPS 센서(Global Positioning System Sensor)

위치를 추적하고 지정된 목적지로 로봇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된다. 주로 야외에서 작동하는 드론, 자율주행 로봇에 사용돼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통신 장치

로봇이 외부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치로 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RF 송수신기, 지그비(Zigbee)와 같은 통신 모듈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여러 대의 로봇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협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7.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제어 장치

로봇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버튼, 조이스틱, 터치스크린 등이 사용되며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받고 로봇이 그에 맞춰 동작하도록 한다. 일부 로봇은 음성 인식이나 제스처 인식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8.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로봇의 동작을 계획하고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적용된 경우 컴퓨터 비전이나 기계학습을 통해 로봇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각 로봇의 소프트웨어는 용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발된다.

□ 로봇의 종류

로봇은 각기 다른 환경과 목적에 맞춰 설계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산업용 로봇은 주로 제조업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돼 팔 형태의 다관절 로봇이나 스카라(SCARA) 로봇은 조립, 용접, 페인팅 같은 작업에 활용된다. 서비스 로봇은 사람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청소, 안내, 배달 등 가사나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청소 로봇과 안내 로봇이 있다. 군사 및 방위 로봇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찰, 폭발물 처리 등에 활용되며 군사용 드론이나 폭발물 처리 로봇(EOD 로봇)이 여기에 속한다. 의료 로봇은 수술과 재활 등의 의료 활동을 돕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빈치 수술 로봇이 있다. 이 외에도 우주 탐사 로봇, 농업용 로봇, 교육용 로봇 등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 있다.

● 다양한 종류의 로봇 ●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우주탐사 로봇)



(폭발물 제거 로봇)

Ⅲ. 경합세번

다음 물품은 로봇의 한 종류로 각 로봇 완성품들의 품목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실내 음식 배달용 로봇

설정한 위치까지 식음료를 싣고 실내외에서 자율주행으로 이송 또는 배달하는 로봇을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로 봐 제8428.90-9000호에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계’로 봐 제8479.89-9099호에 분류할지, ‘화물자동차’로 봐 제8704.60-9090호에 분류할지,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자주식 작업차’로 봐 제8709.11-0000호에 분류할지 여부

□ 홈 로봇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용 서비스 로봇의 일종으로 스피커, 마이크로폰, LCD디스플레이, 카메라모듈, 센서, 스테핑 모터, 통신 부품 등으로 구성된 물품을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제8517호에 분류할지,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호에 분류할지 여부

품목번호	품명	세율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90	그 밖의 기계	
9000	기타	양허 0%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9	기타	
10	가정형의 기기	
20	전자부품장착기	
909	기타	
9091	제87류의 차량용	양허 0%
9099	기타	기본 8%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품목번호	품명	세율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6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61 0000	기지국	
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 [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90	기타	양허 0%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70	그 밖의 기기	
20	가정형	
3000	전자번역기·전자사전	양허 0%
5000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통신망 연결용 제품	양허 0%
9090	기타	기본 8%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10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2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3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5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6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1000	신차	양허 8%

품목번호	품명	세율
8704	화물자동차	
10 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3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0	기타(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9090	기타	기본 10%
8709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1	차량	
11 0000	전기식의 것	기본 8%

IV. 관련 규정

□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 제8428호 해설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揚)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揚)·운반·적하(積荷)·양하(揚荷) 등]그들은 농업·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捲揚)용 기기나 취급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나 기체용의 권양(捲揚)용 기기나 취급용의 기기도 포함한다. 다만, 제8413호에 해당되는 형의 액체엘리베이터와 액체부력만에 의하여 작동하는 부선거(floating dock)·코퍼댐(coffer-dam)과 이와 유사한 선박권양(捲揚)용과 부상용 장치는 제외한다(제8905호나 제8907호).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제8479호 해설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 (i)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 (iii)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한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기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범용(汎用)성 기계류(machinery of general use)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한 조(槽)(vat)나 그 밖의 용기
-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성의 물품용이나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않는 것
- (3) 작업에 대비하여 가공 대상물을 동일 선으로 연속하여 공급하는 용적식의 분배장치
- (4) 아이렛팅(eyeletting)기나 관(管)상 리벳팅(tubular riveting)기로서 방직용 섬유·판지·플라스틱재 료와 가죽과 같은 재료의 어느 것이나 아이렛(eyelet)이나 리벳(rivet)을 타(打)입하는데 적합한 기계
- (5) 편심(偏心) 디스크를 축의 돌출된 끝에 부착시킨 전동기로 구성되는 진동 모터
- (6) 전자(電磁) 진동기
- (7)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다.** 산업용 로봇은 센서를 사용하므로 그들이 작업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작업분야에 있어서 변경에 대한 활동 패턴을 응용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은 수평이나 수직위치에 고정시킨 사람 팔의 구조와 유사한 연계구조이며, 공구홀더용 이동성 홀더 끝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일반적인 수직형 로봇). 또한, 그들은 수직축으로 움직이는 직선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선형 구조의 홀더는 수평축으로 움직이는 조작 장치의 종단부분을 형성하고 있다(수평형 로봇). 이러한 로봇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빔이 장착될 수 있다(빔 로봇).

이들 구조의 서로 다른 부분은 전동기나 액압식이나 압축공기식의 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산업용 로봇은 용접·페인팅·취급·적하(積荷)와 양하(襄荷)·절단·조립·금속의 트리밍(trimming)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며 ; 이들 로봇은 악조건(유독성 물품, 먼지 등)에서나 힘이 드는 일(무거운 짐을 움직이는 것, 지루한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과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용도 때문에, 로봇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한 툴홀더(tool holder)와 툴(tool)을 갖추고 있다[예 : 집게·그립퍼(gripper)·용접 헤드].

이 호에는 단순히 서로 다른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나 제8515호).

□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 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제8517호 해설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두 지점 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전신·무선전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제8543호 해설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입자가속기(particle accelerator) : 이러한 것은 하전입자(전자·양자 등)에 높은 운동 에너지를 주기 위한 장치이다.

... <중략> ...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3) 지뢰탐지기(mine detector) : 금속물질에 가까이 가져가면 그 기기 내에서 발생하는 자속의 변화를 이용한 것이다. 유사한 검출기는 예를 들면, 담배·식료품·목재 등의 통 안에 있는 금속성 이물질의

검출과 매몰관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4)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mixing unit) : 둘이나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출력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녹음에서 사용하며 이러한 것은 때때로 증폭기와 결합되어 있다. ... <중략> ...
- (5) 소음감쇠기(noise reduction unit) : 녹음기와 함께 사용한다.
- (6) 전열용 저항체를 부착한 제상기(除霜機 : defroster)와 제무기 ... <중략> ...
- (7) 싱크로나이저(synchroniser) ... <중략> ...
- (8) 광산용의 전기식폭파기(electrical mine detonator) ... <중략> ...
-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 ... <중략> ...
- (10) 전기도금용(electroplating) 기기·전기분해용(electrolysis) 기기·전기영동(泳動)용(electrophoresis) 기기[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제9027호의 전기영동(泳動)용 기기를 제외한다]
- (11)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 ... <중략> ...
- (12) 자외선 조사(照査)기기(ultra-violet irradiation equipment) : 일반 공업용
- (13)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와 확산기기(diffusing apparatus)(예 : 공업용·구내의 오존화용)
- (14) 예를 들면, 손목시계·컵·인사용 카드와 같이 여러 가지의 실용적인 물품이나 그 밖의 다른 물품 속에 결합되는 전자 무지컬 모듈(module) : 이러한 모듈(module)은 대개 전자집적회로·저항기·확성기·수은전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모듈(module)에는 고정된 무지컬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 (15)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라이저(electric fence energiser)
- (16) 텔레비전 수신기·비디오 녹화기나 그 밖의 전기기기의 원격조종용 무선 적외선장치(cordless infrared device)
- (17) 전자발광장치(electro-luminescent device) ... <중략> ...
- (18) 디지털 비행기록장치(digital flight-data recorder) ... <후략>

□ 관세율표 제8703호의 용어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제8703호 해설서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하며 ; 그러나 제8702호의 자동차(motor vehicle)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차량은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피스톤식 내연기관·증기기관·전동기관·가스터빈·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의 결합 등)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1) 설상(雪上) 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 (a) 설상(雪上) 주행용 차량(예 : 스노우모빌)
 - (b)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 (2) 그 밖의 차량
 - (a) 자동차(예 : 리무진·택시·스포츠카와 경주용 자동차)
 - (b) 구급차·최수 호송차와 영구차와 같은 특수운송차량
 - (c) 모터홈(캠퍼 등),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침실·주방·화장실 등)를

갖춘 차량

- (d) 튜브새시를 가진 사륜자동차로서, 모터카 형태의 조향시스템[예 : 액커만(Ackerman) 원리에 근거한 조향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이 호에서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이란 최대 9인(운전자를 포함한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갖춘 차량으로 내부는 구조변경 없이 사람과 화물의 두 가지 수송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화물 운반(제8704호) 목적이 아닌 승객운송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을 나타내는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자동차의 분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이 호로 분류하는 자동차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총중량이 5톤 미만 급이며 운전사와 승객을 위한 구역으로 단일의 폐쇄된 내부공간을 갖고 있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또 다른 구역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multipurpose)' 자동차[예 : 밴형(van-type) 자동차·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특정한 픽업형 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을 포함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특징들은 이 호로 분류하는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상의 특성이다.

... <중략> ...

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동기를 결합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 : Hybrid Electric Vehicle)'라고 한다. 기계적 추진 목적으로, 이들 자동차는 소모성 연료와 전기 에너지/전력 저장 장치[예 : 축전지(electric accumulator), 축전기(capacitor), 플라이휠/발전기] 모두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파워트레인 구성[예 : 병렬 하이브리드, 직렬 하이브리드, 동력분기나 직렬-병렬 하이브리드]과 하이브리드화의 정도(즉, 완전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PHEV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는 전력 그리드 아웃렛(grid outlet)이나 충전소에 플러그를 꽂아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이다.

축전지 팩에 의하여 동력을 얻는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EV : Electric Vehicle)'라고 한다.

그러나, 추진이 아닌 기능에만 사용되는 전력원(예 : 교류발전기/시동기)을 갖춘 자동차는 HEV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러한 동력원은 스탑-스타트 시스템(stop-start system)을 구동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회생 제동 및 충전 관리 시스템(regenerative braking and charge management system)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기술(hybrid technology)' 또는 '마이크로 하이브리드(micro hybrid)'라고 부를 수 있지만, 추진용 전기모터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 관세율표 제8704호의 용어

화물자동차

□ 관세율표 제8709호 용어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V. 품목분류

1. 실내 음식 배달용 로봇

결정 세번	제8428.90-9000호
물품 설명	<p>○ 개요</p> <p>앱을 통해 커피 등 식음료 주문 시, 해당 물품을 신고 설정된 위치까지 자율주행으로 이송하는 배달용 로봇</p> <p>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후략>’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8.90호에는 ‘그 밖의 기계’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p> <p>결정 사유 본건 물품의 기능인 실내외에서 식음료를 이송하는 작업은 제8428호의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기계의 범주에 해당하고, 본건 물품은 소호 제8428.50호의 산업용 로봇이 아닌, 상업에서 사용하는 서비스(service)용 로봇이므로 소호 제8428.90호의 ‘그 밖의 취급용 기계류’에 해당함(WCO HSC 제72차 결정).</p> <p>따라서, 본건 물품은 화물을 취급하는 ‘그 밖의 취급용 기계류’로 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p>

2. 홈로봇

결정 세번	제8543.70-9090호
물품 설명	<p>○ 개요</p> <p>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용 서비스 로봇의 일종으로, 스피커, 마이크로폰, LCD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센서(조도, 가속도, 터치), 스테핑 모터, 통신 부품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p> <p>정보검색, 가전기기 제어, 교육 콘텐츠 영상 재생, 음악 재생 등을 위해 음성신호 전(前)처리* 및 신호변환 처리하여 무선통신망(와이파이, 블루투스)을 통해 송수신하는 기기</p> <p>* 서버에서 음성인식을 하기 위한 잡음, 잔향, 에코 성분 제거</p> <p>※ 크기 : 27.9(높이) X φ17.7(폭)cm, 중량 : 약 2.0kg</p> <p>○ 주요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검색 : 날짜, 요일, 시간, 날씨 음성 안내 등 정보 검색 - 가전기기 제어 :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로봇청소기, 냉장고, 조명 등 제어 - 영상 재생 : 교육 콘텐츠(아들과 딸 북클럽) 등 동영상 재생 - 음악 검색 및 재생

○ 주요 구성 요소별 기능

- 본체(바디) : 주요 부품(LCD, 렌즈, 회로 PCB)을 잡아주는 프레임 역할을 하며, 모션 구동, 터치, 스피커 기능 등 포함
- AP(Application Processor) : 디스플레이, 카메라, 와이파이·블루투스 IC 지원, 모션 MCU와 통신
- 디스플레이 모듈 : 영상정보 표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표정, 검색정보, 교육컨텐츠 표시)
- 보이스 IC : 음성 인식을 위한 전처리 기능. 서버에서 음성 인식을 위한 호출 및 데이터 변환
- 모션 MCU(Micro Controller Unit) : AP와 통신, 모터 드라이버 제어하여 스텝핑 모터 동작
- 오디오 IC : 스피커 구동을 위한 오디오 앰프
- 센서
 - 조도 센서 : LCD 자동 밝기 구현용
 - 가속도 센서 : 모션 움직임용(예 : 제품 넘어졌을경우 충격 전달 시 “아야”, “아파”)
 - 터치 센서 : 헤드 부분 터치 시 반응용(예 : 머리 쓰다듬으면 “네”, “헤헤” 등)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스피커, 마이크, LCD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센서(조도, 가속도, 터치), 모터 등으로 구성된 복합기계로서, 정보 검색, 가전기기 제어, 교육 컨텐츠 영상 재생, 음악 재생 등을 위한 물품임.

쟁점물품은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의 컨텐츠 내용에 따라 정보 검색, 가전기기 제어, 교육용 영상 재생, 음악 재생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 기능과 관계없이 본건 물품 전체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개인용 서비스 로봇’에 해당하며, 또한 무선자료 송수신(통신), 음성 전처리 및 신호변환 기능은 본건 홈로봇이 작동하기 위해 단순히 무선방식의 데이터 입출력 수단으로서 활용된 것임.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43.7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쟁점 서비스 로봇은 타 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16부 또는 제85류의 주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전기기기로서 제8543호에 해당함.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의 컨텐츠 내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용 서비스 로봇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3. 자율주행기능을 갖춘 로봇택시

결정 세번 제8703.80호

○ 개요

자율주행 레벨4 시스템을 갖춘 로봇택시

- 물품 설명**
- 순수 전기엔진으로 구동하는 5도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5인승 좌석
 - 로봇택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틸리티 차량에 무인 차량 기술 회사로 센서, 컨트롤러, 차량 인터페이스 제어장치, 글로벌 차량 위치 확인 모듈, 원격 차량을 설치함.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703호의 용어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품은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한 순수 전기엔진으로 구동하는 5도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이 분류되는 제8703.80호에 분류함.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밀크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우유는 소의 젖이다. 소젖, 쇠젖 혹은 타락(駝酪)이라고도 부른다. 본래 송아지의 성장을 위한 것이지만, 인류가 가축으로 기르는 동물의 젖을 먹으면서 나중에는 대다수가 다른 동물의 젖을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젖소 역시 자기가 낳은 송아지에게 먹일 양보다 훨씬 많은 젖을 생산하도록 품종도 개량됐다.

우유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는 만큼 그대로 마시기도 하며,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권보다 낙농업이 발달했던 유럽 및 중동의 식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식재료로 기능해 왔다. 오늘날 우유는 치즈, 버터, 크림, 요구르트 등 다양한 유제품으로 가공돼 널리 소비된다. 빵과 과자를 만들 때를 비롯해 우유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우유 60.1%, 탈지분유 8.4%, 설탕 9.3%, 버터, 덱스트린, 글리세린 지방산에스테르, 구아검, 제일인산나트륨·제일인산칼륨, 물 18%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 액상을 종이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인 제2106.90-903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농축(예 :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함)와 크림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의 것(블록 모양·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 재구성한 것인지에도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밀크와 크림의 경우 해설서 외에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따른다.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p>첨가물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402호에 분류한다.</p> <p>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 해설서(이하 ‘HS 해설서’라 한다)상의 제4류에서 첨가를 허용하는 식품첨가물(안정제·산화방지제·비타민 및 이와 유사한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모두 합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일 것</p>
---	--	--

	<p>2) 전분과 그 밖의 곡물가루, 구경(球莖 : 알줄기)이나 괴경(塊莖 : 덩이줄기)의 가루, 채두류(菜豆類)가루 등 식물성 원료로서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을 모두 합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일 것</p> <p>3) 식물성 지방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일 것</p> <p>4) 덱스트린(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일 것. 다만, 덱스트린이 포도당과 함께 첨가된 경우에는 그 밖의 감미료*로 보아 덱스트린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p> <p>5) 1)부터 4)까지의 첨가물을 제외한 그 밖의 첨가물(향료는 제외한다)이 각 성분별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p> <p>6) 1)부터 5)까지의 첨가물을 모두 합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p> <p>비고 4)에서 ‘그 밖의 감미료’란 품목번호 제1702호에 분류되는 그 밖의 당류, 인공 감미료(소르비톨·에리스리톨·아스파탐·사카린)와 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말토덱스트린을 말한다.</p>
--	---

본 물품은 우유 60.1%, 탈지분유 8.4%, 설탕 9.3% 이외에 첨가물을 모두 합한 중량이 10% 이하로 상기 규칙에 충족하는 물품이었다.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6호 ‘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에 따라 제 0402.99-900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PREPARATIONS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2106.90-9030 (A 8%)	Milk,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402.99-9000 (A 40%)

명품 귀걸이를 헐값에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올해 멕시코의 한 남성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귀걸이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가의 1000분의 1 가격에 구매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해외 매체에 따르면 남성은 작년 12월 까르띠에 홈페이지에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걸이 가격이 237페소(1만 9,000원 상당)로 표시돼 있는 것을 보고 서둘러 두 세트를 구매했다고 한다.

나중에 정정된 이 귀걸이의 정가는 그보다 1,000배 비싼 23만 7,000페소(1,900만 원 상당)였다는 것. 남성이 구입한 후 일주일이 지나고 까르띠에에서 홈페이지 가격 표시에 오류가 있어 주문 취소를 해달라며 위로 차원으로 선물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지만, 결국 이 남성은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며 규정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결국 제품을 받았다고 한다.

까르띠에는 보석·시계 등 귀금속을 주력 상품으로 선보이는 브랜드로, 핸드백, 지갑이나 패션 제품도 제조·가공·유통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명품 시계와 보석 두 분야 모두에서 선두권인 전 세계 유일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명품 주얼리 업계에서 반클리프 아펠, 불가리, 티파니와 함께 Top 4로 손꼽힌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 나라로 꼽혔다. 2022년 한국인의 명품 소비액은 2021년 대비 24% 증가한 168억 달러로 1인당 지출액으로 환산하면 325달러에 달했다.

관세율표에서 귀걸이·팔찌·반지와 같은 신변 장식 용품은 진품 또는 모조품 여부를 불문하고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 주화’에 분류된다.

단 귀금속의 것이나 입힌 것은 제7113~7116호에, 모조(imitation) 제품의 것은 제7117호에 분류된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06호_2024.11.11.

최신개정법령

공고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및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고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및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공고 제2024-18호, 2024.11.8.)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및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일시 : 2024. 12. 19.(목) 14:00~16:00(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16:30~18:00(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 추후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4. 11. 22.(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후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 우편번호 : 30118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ljh773@korea.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나.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 우편번호 : 30118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화 : (044) 203 - 5864,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nkw0914@korea.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입법예고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64호, 2024.11.5.)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10.31)에 따라, 북한 전용 감시대상품목(watch-list)에 고체 추진미사일 분야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고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북한 전용 감시대상품목(watch-list)에 고체추진미사일 분야 품목 15개 추가(별표 6)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47
- 메일 : kimmyji@korea.kr

※ 별표 6 : www.custra.com 참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59호, 2024.1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LMO 주키니호박 관련 ‘LMO 종자의 불법수입 및 유통대책’으로 검역신고 위반자의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우편물·택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48조)
 - 우편물·택송품의 검역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로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 나. 검역결과 처분 세부절차 위임근거 마련(안 제16조)
 - 부령에 검역결과 처분 관련 세부 절차가 있으나, 법상 위임근거가 미비하여 신설
- 다. 해외여행객 대상 식물검역 유의사항 안내(안 제45조의4)
 - 공항만 시설관리자, 운송수단 운영자에게 입국장, 비행기 내에서 검역정보를 안내하도록 근거 마련
- 라. 택송품 반입 시 신속한 통보의무 이행 도모(안 제50조)
 - 택송업자의 검역 통보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지체 없이’를 추가하여 신속한 의무이행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twosun@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2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1. 행정규칙명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00호, 2024.00.00.)

2. 제정 이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024.4.25.)에 따라 ❶「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4-9호, 2024.2.21.), ❷「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2023-57호, 2023.9.27.), ❸「관세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2049호, 2021.3.30.)을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

3. 주요 내용

- 보세판매장 특허의 기준 및 절차(제3조~제14조)
 - 보세판매장 특허 요건 및 시설 요건
 - 신규특허 및 특허갱신 절차
-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제15조~제18조)
 - 특허심사위원 위촉·선정 방법 및 위원회 진행 방법
-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제19조~제26조)
 - 청렴옴부즈만의 직무·권한 및 의무
 - 청렴옴부즈만의 선정 및 권고사항 처리절차 등
- 운영인의 의무 및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등(제27조~제46조)
 -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준수 사항
 -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반출입 절차 및 판매 방법
 -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의 인도 절차
 - 보세판매장간 물품 양수도 업무처리 절차
 - 미인도 물품 및 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절차 등

-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 등(제47조~제51조)
 - 보세판매장에 대한 세관장의 업무감독 사항 및 담당공무원의 임무
 -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업무 범위

-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제42조)
 - 인도장에서 미인도 된 물품을 보세판매장 외에도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제2항)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반영(제47조)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명 개정*(24.9.30.)으로 고시 적용 범위가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해당 고시 적용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인 부담 경감(제8항)
 -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4. 제정 전문 : 별첨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 : 2024. 00. 00.

7.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준호 사무관(☎042-481-7637, jackson15@korea.kr)
허 민 주무관(☎042-481-7853, promini@korea.kr)
- 제출기한 : 2024. 00. 00.
-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 제정 전문 : www.custra.com 참조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36호, 2024.11.8.)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7.6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7.00~7.98%로 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또는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하이난 이성(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나. 이성 다후와 (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다. 하이난 이성 무역 (Hainan Yisheng Trading Co., Ltd.) 라. 하이난 헝룽무역(Hainan Hengrong Trading Co., Ltd.)	7.00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또는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씨알씨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나. 주하이 씨알씨 (Zhuhai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다. 씨알씨 뉴 머티리얼 (China Resources Chemicals New Material Company Limited)	7.98
	3. 그 밖의 공급자	7.98

비고 :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 및 제2호까지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FAX : 044-215-807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74호, 2024.11.6.)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25년 WTO TRQ 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양허관세 추천 대상 1개 품목(천연꿀)의 배정방식 변경 발생
- 고시 본문 내 양허관세 추천신청인에 '납세의무자'를 명기하여 신청 주체에 대한 해석상 오류 사전방지
 - 별지 서식(제1호~제5호)에는 신청인이 '납세의무자'로 병기

2. 주요 내용

- 가. 【별표1】 품목 중 천연꿀의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변경
 - (기존)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 (변경) 수입권공매

나. 고시 본문 내 양허관세 추천신청인에 '납세의무자' 명기(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 전자우편 : ajye12@korea.kr
- 팩스 : 044-868-0610

4. 그 밖의 사항

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전화: 044-201-20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서비스

— 2024년 12월 오픈!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주간 관세무역정보 고객 의견 조사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설문조사 참여 시
스타벅스 기프트콘
을 드려요!!



설문대상

주간 관세무역정보
구독자



설문내용

주간 관세무역정보
고객 의견 설문



설문기간

2024. 11. 11. ~
2024. 11. 22.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